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기독교정신과 상동교회의 민족정신을 토대로 하여 중등교육 및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5.29.개정,2012.5.7.개정)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삼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삼일중학교
2. 삼일상업고등학교
3. 삼일공업고등학교
4. 협성대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0에 두고, 분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92번길 44-28에 둔다.(2014.12.04.개정)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한다 (2008.8.13개정)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2008.8.13.개정)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조항인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2014.12.04.신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 보고 및 공시】 (2008.8.13신설)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삭제)(2007.5.29개정)

제13조 【삭제】 ~ 제21조 【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2007.5.29.개정,2008.8.13.개정)
2. 감사 2인

②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한다.(2007.5.29.개정)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교인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임기중 이사로 한다.(2010.10.28.개정)
3.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에서 추천된 사람 약간명
4. 상동교회 담임목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상동교회에서 추천된 사람 약간명

③필요에 따라 이사중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의 이사중 4인은 개방이사로 한다.(2008.8.13.개정)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2007.5.29.개정)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2007.5.29.개정)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2005.10.10.개정)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개방이사의 선임】 (2007.5.29.개정,2008.8.13.개정)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자격】 (2007.5.29.개정,2008.8.13.개정)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및 장로 이어야 한다.

제24조의 4 【추천위원회 구성】 (2008.8.13.신설)

①추천위원회는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일중 학운위에서 추천하는자 1인

1. 삼일상 학운위에서 추천하는자 1인

1. 삼일공 학운위에서 추천하는자 1인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1.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③기타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5.29.개정)

③이사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5.29.개정,2008.8.13.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07.5.29.개정)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2005.10.10.개정)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2007.5.29.개정,2008.8.13.삭제)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

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2008.8.13.신설)

제2절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와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2007.5.29.개정)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5.29.개정)

제33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한다.(2007.5.29.개정)

제35조 【이사회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7.5.29.개정)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조, 도매, 부동산 임대(2005.10.10.개정)
2. 주식투자사업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삼일기업사 및 대한교과서(주) 주식투자사업을 경영한다.(2005.10.10.개정)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삼일기업사 및 대한교과서(주) 주식투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04-1 번지에 둔다.(2005.10.10.개정)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8.13.개정)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2008.8.13.개정)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2008.8.13.개정)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43조 【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하며 교육공무원 정년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2007.5.29.개정,2008.8.13.개정)

②대학교육 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2007.5.29.개정)

1.근무기간 : 교수는 정년까지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부교수,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012.5.7.개정)

2.보수 :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전공(학과) 등에 대한 사항] ·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비전임교원 임용은 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하여 총장이 임용하되, 강사는 총장이 임용한다.(2008.8.13.개정,2009.12.17.개정,2019.5.27.개정)

④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각대학원장,교목실장,총무처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외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⑤총장과 부총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총장 직무대리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⑥중.고등학교의 교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제1항 및 제2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른 강사,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는 총장이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⑧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⑨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 2 【기간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07.5.29.개정,2008.8.13.개정,2010.10.28.개정)

제43조의 3 【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비전임교원(연구교수는 제외한다)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2003.3.11.개정)(2019.7.1.개정)

②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3조의 4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2014.12.04.신설)

- ①중·고등학교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상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수당지급일, 수당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 ④대학교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희망퇴직을, 20년 이상 근속한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 ⑤대학교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3조의 5 【전형결과의 공개】 (2007.5.29.개정)

- ①중·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 한다.

제43조의 6 【복무】 (2018.6.26.신설)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및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때(2008.8.13.개

정, 2014.12.04.개정)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008.8.13.개정)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2008.8.13.신설)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2008.8.13.신설)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2018.6.26.신설)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할하여 휴직을 명할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8.8.13.개정)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2008.8.13.개정)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2008.8.13.신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08.8.13.신설)

10. 제44호제11호의 사유로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2018.6.26.신설)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9조 【보수 및 승급일】 ①중·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 및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따르되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원의 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2002.7.3.개정, 2012.9.10.개정, 2018.6.26.개정)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7.5.29.개정)

제52조 【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①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7.5.29.개정)

1.대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또는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2012.5.7.개정)

2.대학교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동의에 관한사항.

3.정년보장 교원의 임용

4.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계약제 교원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②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사항

5.기타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1.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조직】 ①인사위원회는 각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총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따로 처장 중에서 임명한다.(2002.7.3개정)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의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감봉·견책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2012.9.10.신설)

제6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12.9.10.개정)

제61조 【교원 징계위원회의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 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2007.5.29.개정)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서의 정상 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2007.5.29.개정, 2012.9.10.개정, 2015.9.1.개정, 2018.6.26.개정)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69조 【학교 운영위원회 목적】 ①제3절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기타학교와 관련된 주요 건의 사항
10.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2007.5.29.개정, 2008.8.13.개정)
11.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007.5.29.개정)

②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2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출 등】 ①위원회 구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준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2조 【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의 자격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73조 【위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⑥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⑦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⑧위원이 운영 규정 제72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⑨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7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5조 【서류제출 요구】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7조 【소위원회 설치·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78조 【의사 정족수 등】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9조 【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0조 【간사 및 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운영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①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언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82조 【운영경비 및 위임 규정】 ①위원의 연수경비·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004.6.21.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의 2 【임용기간】 삭제

제85조 【복무】 ①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대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위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2018.6.26.개정)

제85조의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의 3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중·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4.12.04.개정)

②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준용한다.(2012.9.10.신설)

③대학교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자는 희망퇴직을, 20년 이상 근속한자는 명예퇴직을 할수 있다. (2014.12.04.신설)

④대학교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2014.12.04.신설)

제85조의 4 【공로연수】 ①중·고등학교 정규직 사무직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2019.10.21.신설)

②공로연수에 필요한 재원,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자, 인사관리, 대상자 선정 절차등 공로 연수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2019.10.21.신설)

제86조 【보수 및 승급일】 ①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대학교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원의 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2002.7.3.개정,2012.9.10.개정,2018.6.26.개정)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 제89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2015.9.1.개정)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사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5.9.1.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89조2 【특수목적을 위한 위원회 설치】 ①이 법인에 설치된 산하 각급학교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쇄신을 위하여 특수목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019.1.22. 신설)

제2절 대 학 교

- 제90조 【총장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둘 수 있다.(2014.12.04.개정)
 ④교학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고, 학사 전반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4.12.04.개정)

⑤대외협력부총장은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교수 또는 전문직능인 중에서 보하고, 전문직능인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대외전략업무(발전기금모금, 홍보)와 대외협력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2014.12.04.신설,2017.1.25.개정)

⑥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비서실장은 조교수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5.9.1.개정)

⑦총장 직속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육혁신원, 경력개발원을 두며, 각 단장과 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2017.1.25.신설)(2019.1.22.개정)(2019.5.27.개정)

⑧교육혁신원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과), 창의융합센터(과), 교육질관리센터(과)를 두고 센터장과 과장을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7.1.25.신설)

⑨경력개발원에는 취·창업지원센터, IPP센터를 두고 센터장과 과장을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9.1.22.신설)

⑩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과장을 둘 수 있으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9.5.27.신설)

제91조 【학장·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대학원장은 교수로, 학장은 부교수이상으로 보한다.(2007.5.29.개정)

③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기 당해 대학과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①대학본부에 교목실, 교무처, 학생복지처, 대외협력처, 기획처, 총무처, 도서관, 전산정보실을 둔다.(2003.10.15.개정,2005.4.16.개정,2010.8.23.,2013.3.1.개정, 2019.5.27.개정)

②교목실장은 부교수 또는 4급 이상의 별정직목사로 보하고 총무처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하며, 각 처장, 관장, 실장은 교수 및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기획처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2007.5.29.개정,2010.8.23.개정,2011.4.14.개정,2015.9.1.개정, 2019.5.27.개정)

③총무처에 총무과, 재무과, 시설관재과를 두며 각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03.10.15.개정,2013.3.1.개정,2015.9.1.개정)

④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과, 입학홍보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03.10.15.개정,2005.4.16.개정,2008.10.27.개정,2010.8.23.개정, 2013.3.1.개정,2015.9.1.개정)

⑤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교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다.(2003.10.15.개정,2005.4.16.개정,2013.3.1.개정,2015.9.1.개정,2017.1.25.개정)

⑥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03.10.15.개정,2005.4.16.개정,2013.3.1.개정,2015.9.1.개정,2019.1.22.개정)

⑦기획처에 기획예산과, 평가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03.10.15.개정,2013.3.1.개정,2015.9.1.개정)

⑧교목실의 교목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2019.5.27.신설)

⑨도서관에 지원과와 운영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9.5.27.신설)

⑩전산정보실에 전산정보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9.5.27.신설)

제92조의 1 【대학원 및 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원에 교학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03.10.15.개정,2013.2.22.개정,2015.9.1.개정)

②대학교 교학과를 두며 학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2013.2.22개정)

제92조의2 【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2015.9.1.개정)

③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004.6.21.신설)

제93조 【부속 및 부설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2019.5.27.개정)

②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및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단, 외부위탁 부속 및 부설기관은 예외로 한다.(2008.7.17.개정,2012.2.28.개정,2015.9.1.개정)

③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012.2.28.개정)

제93조의2 【장애학생지원센터】 ①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장애학생지원센터에 과장을 둘 수 있으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19.5.27. 조신설)

제93조의3 【사회봉사지원센터】 ①사회봉사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사회봉사지원센터에 과장을 둘 수 있으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2019.5.27.조신설)

제94조-(2019.5.27.삭제)

제95조 【성서고고학 박물관】 ①성서고고학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2007.5.29.개정,2015.9.1.개정)

②성서고고학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원이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과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2003.10.15.개정,2018.6.26.개정)

제96조-(2019.5.27.삭제)

제96조의2 【국제교류원】 -삭제(2013.3.1)

제97조 【예비군 본부】 ①예비군 본부에는 예비군 대대장을 두고, 대대장은 별정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2015.9.1.개정)

②예비군 대대에 예비군 중대를 두며, 중대장은 별정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2015.9.1.개정)

제98조 【보건소】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두며, 소장은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별정직 주사로 보한다.

제98조의 2 -(2012.9.10.삭제)

대학평의원회 (2007.5.29개정)

제98조의 3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2007.5.29.개정)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8조의 4 【평의원회의 구성】 (2007.5.29.개정,2018.6.26.개정)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교원 2명
- 2.직원 2명
- 3.학생 2명
- 4.학부모 1명
- 5.동문 2명
- 6.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2명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8조의 5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총장이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한다
(2007.5.29.개정,2018.6.26.개정)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4. 학부모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5. 동문의 대표는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제98조의 6 【평의원회 의장 등】 (2007.5.29.개정)

-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8조의 7 【평의원의 임기】 (2007.5.29.개정)

-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 98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8조의 8 【평의원회의 기능】 (2007.5.29.개정,2008.8.13.개정)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8조의 9 【운영규정】 (2007.5.29.개정)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고등학교

제99조 【교장등】 ①상업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2004.6.21.개정)

②공업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③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④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0조 【하부조직】 ①상업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공업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중 학교

제101조 【교장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 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정원

제103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 칙

제104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견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6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임 기	주소
이사장	최왕희	4 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59번지
이 사	신현익	4 년	경기도 수원시 남창동 134번지
“	홍수복	2 년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2가 29번지
“	정동운	2 년	경기도 수원시 북수동 368번지
“	김병호	학교장재임중	경기도 수원시 남수동 95번지
감 사	최찬영	2 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53의3
“	함진환	1 년	경기도 수원시 장안동 124번지

부 칙

- 이 정관은 196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6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6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6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7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7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7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8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8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8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8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중·고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1980년 11월 25일부터 가산한다.
- 4.(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 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 정관은 1983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정관은 1984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 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히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삼일중학교장: 1991년 2월 28일, 2.삼일상업고등학교장:1992년 2월 26일

3.삼일공업고등학교장:1992년 9월 14일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감리교협성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장은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협성신학대학 교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감리교협성 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협성신학대학 일반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④(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감리교 협성신학교는 1998년 2월 28일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대학의 명칭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협성신학대학”을 “협성신학대학교”로 변경한다. 단, 이 정관 시행당시 제직중인 협성신학대학의 학장 및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거 협성신학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총장 및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인사위원회 위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인사위원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인사위원회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보직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보직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성신학대학의 재적생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협성신학대학교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 43조의 4(명예퇴직)는 1993년 6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2.(대학의 명칭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협성신학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거 협성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총장 및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인사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인사위원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보직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보직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정관은 199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대학원에 관한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대학교원의 임·면) 이 정관 시행당시 협성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이 정관 제 43조 제2항의 임용기간을 적용한다.
3. (일반직원 임용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직원의 임용계약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신규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폐지되는 학교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1992년 3월 1일 개정된 정관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감리교 협성신학교는 2001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직원 임용계약에 대한 경과 조치) 계약직에 대하여는 정관 제84조 2항이 폐지됨에 따라 기임용된 일반직원은 그기간 만료일에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 72 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 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 1항 제2 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정관 제 43조 2항에 의하여 기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시 까지 종전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3조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2008.7.17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및 제96조의2 및 별표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2010.8.23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②항)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93조②항 및 ③항)-이사회심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정관 제43조 2항에 의하여 기 임용된 전임강사는 임기 만료 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비전임교원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 받는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8명
일반직원 계	6명
2급(참여)	1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기)	0명
기능직 계	2명
6등급(운전원)	1명
8등급(사무보조원)	1명

(별표2)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1. 협성대학교의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42명
일반직 계	80명
2급(참여)	1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사)	8명
5급(부참사)	12명
6급(주사)	19명
7급(부주사)	15명
8급(서기)	15명
9급(부서기)	8명

기술직 계	19명
4급(사서참사)	1명
5급(사서, 전산, 전기)	4명
6급(사서, 전산, 전기)	4명
7급(부사서, 전산, 전기)	6명
8급(사서보, 전산, 전기)	4명
기능직 계	34명
6등급 운전원	1명
건축원	1명
전기원	1명
난방원	1명
통신원	1명
7등급 운전원	2명
건축원	1명
전기원	2명
난방원	2명
통신원	2명
사무보조원	1명
방호원	5명
8등급 운전원	1명
건축원	1명
전기원	2명
난방원	2명
통신원	2명
사무보조원	명
방호원	2명
9등급 방호원	4명
별정직 계	9명
4급 별정직	1명

5급 별정직	4명
6급 별정직	1명
7급 별정직	1명
8급 별정직	2명

2. 삼일공업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2015.09.01.개정)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수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5급	1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2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2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8급	1
행정직군 소계				6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6급	1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7급	3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8급	1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1
기술직군 소계				6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6급	1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7급	1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8급	1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1
관리운영직군 소계				4
일반직원 합계				16

3. 삼일상업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2015.09.01.개정)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수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5급	1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2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1
행정직군 소계				4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6급	1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7급	2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8급	1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1
기술직군 소계				5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6급	1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7급	1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8급	1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1
관리운영직군 소계				4
일반직원 합계				13

4. 삼일중학교 일반직원 정원(2015.09.01.개정)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수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1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2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8급	1
행정직군 소계				4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7급	1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8급	1
기술직군 소계				2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7급	1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8급	1
관리운영직군 소계				2
일반직원 합계				8